

「평창군 문화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## 심 사 보 고 서

### 1. 심사경과

- 제안일자 및 제안자: 2023년 8월 30일, 평창군수 제출
- 회부일자: 2023년 9월 11일 회부
- 상정일자: 제28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 
(2023년 9월 11일 상정·의결)

### 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: 가족복지과장)

#### 가. 제안이유

입안 시 의무 규정 대상이 아닌 평창군 문화복지센터 운영위원회 조항을 삭제하여 효율적인 시설관리와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.

#### 나. 주요내용

- 1) 운영위원회 조항 삭제(안 제17조)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(전문위원: 김영옥)

- 본 조례안은

문화복지센터 운영위원회 관련 조항을 삭제하여

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,

○ 위원회 조항은 조례 등의 입안 시 법령에 따른 의무규정이 아니면 재량에 해당되는 영역이고,  
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 등에 따르면,  
위원회의 효율적인 정비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음.

○ 검토결과,  
법령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이 없으며,  
실무적인 검토 하에 문화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라면,  
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리라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의결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